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11. 28 선고 2019가단1148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(등기부상의 상호:주식회사 C)

변론 종결2019. 11. 7.

판결 선고2019. 11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4. 7. 1. 접수 제474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임솔

별지